



결정의 재고 및 재검토

만일 귀하가 [1992 년 수입식품 규제법](#)의 **최초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결정**은 1992 년 수입식품 규제법의 제 42(2)관에 명시되어 있는 결정입니다.

재고는 아래 표 1 에 나와 있는 제 42(2)관에 따라 명시된 최초 결정에 대해서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제 42 절에 따라 재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농업수자원부는 수입업체가 제 42 절 신청을 발동하기 **전에** 수입 식품과 관련하여 내려진 최초 결정에 대한 우려사항을 [식품 안전 관리자](#)에게 연락하여(이메일: IFIS-InspectionSupport@agriculture.gov.au) 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식품 안전 관리자는 영업일 기준 10 일 내로 업체의 이메일에 답변할 것입니다.

법령의 관련 부분을 읽고 결정의 재고 요청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업체의 책임입니다.

표 1. 1992 년 수입식품 규제법 제 42 절에 따라 재고 가능한 최초 결정

시나리오	1992 년 수입식품 규제법 제 42 절에 따라 재고 가능한 최초 결정
식품이 검사 및/또는 분석 대상인 경우	인증 관련 식품이 검사를 요하거나, 또는 검사 및 분석을 요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식품 관리 인증을 발급하는 제 12 절에 따른 결정
식품이 조사 및/또는 분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수입식품 검사 통지를 받은 경우	명시된 식품(추가적인 수입식품 통지를 위한 신청 대상이거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아닌)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식품으로 규정되며 해당 식품을 취급할 방식을 정하는 수입식품 검사 통지를 발급하는 제 14(1)관에 따른 결정
식품의 동일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식품 검사 통지를 신청했으나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	추가적인 수입식품 검사 통지 신청을 거부하는 제 14(6)관에 따른 결정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식품의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식품 검사 통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식품은 추가적인 검사 및/또는 분석 대상이었으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음.	해당 식품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식품으로 규정되며 해당 식품을 취급할 방식을 정하는 추가적인 수입식품 검사 통지를 발급하는 제 14(6)관에 따른 결정
해외 식품 가공 운영 허가 철회	제 19(3)관에 따라 결정을 철회한다는 장관이 내린 결정
이전 화물이 처리, 폐기 또는 재수출되기 전까지 식품 관리 인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제 20(13)관에 따라 제 20(2)관, (3)관 또는 (4)관에 따른 통지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 관리 인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장관이 내린 결정
미결제 비용이 결제될 때까지 식품 관리 인증 또는 수입식품 검사 통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제 36(8)관에 따라 연방 정부에 비용을 결제하지 않은 자가 수입한 식품에 대해 서류를 발급하지 않도록 내리는 장관 명령에 의한 결정
폐기된 식품에 대한 보상 요구를 허가 받지 못한 경우	제 39(1)관에 따른 장관의 결정

1992 년 수입식품 관리법 제 42 절에 따른 장관의 재고 신청

서면 신청은 반드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초 결정 통지를 처음 받은 날로부터 28 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
- 1992 년 수입식품 관리법 제 42 절에 따라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최초 결정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 제 42(2)관에 나온 최초 결정 중 한 개 이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십시오.

장관이 귀사의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8 일 이내에 장관의 결정과 그 결정 사유에 대해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다음 방법으로 수입식품청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이메일: foodimp@agriculture.gov.au

우편:

Director, Imported Food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GPO Box 858
Canberra ACT 2601

행정심판소(AAT) 신청

최초 결정의 재고에 따른 장관의 결정이 귀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경우 행정심판소에 장관 결정을 검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는 장관이 최초 결정을 재고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